

1. 재해발생 경위

2004년 2월 ○일 10:40분경 충남 소재 ○○물산(주)빙과라인 팔 투입용 혼합기에서 피재자가 원료 적치대에 있던 콩팍시럽을 밀대로 밀어 넣던 중 오른팔이 혼합기 회전날에 말리면서 혼합기 외벽 상부에 피재자의 머리가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요인

- 가. 혼합기의 덮개를 개방한 채로 원료 투입
- 나. 혼합기의 덮개와 구동모터의 연동장치 미설치
- 다.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3. 재해 요인도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혼합기의 덮개와 구동모터에 연동장치 설치

혼합기의 덮개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회전날의 구동모터가 가동되지 않고, 사용중에 덮개를 개방하면 회전날이 정지토록 연동장치 설치

나. Key Type 기동스위치 설치 및 안전표찰 부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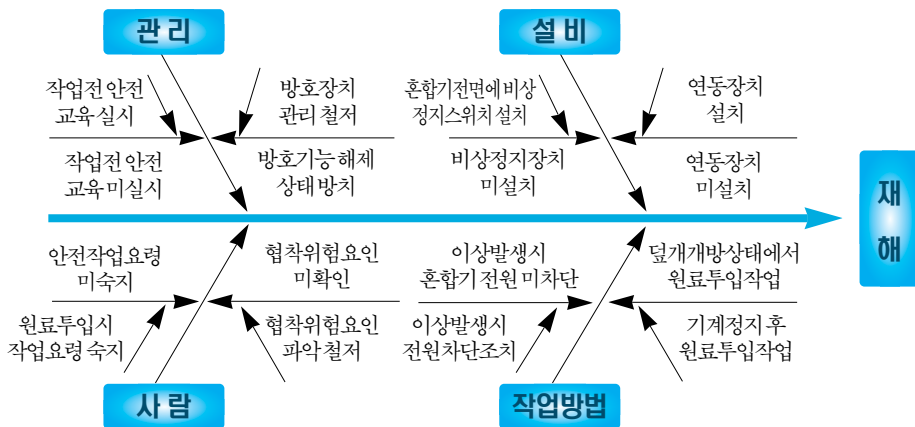
혼합기의 정비·보수작업 중 타 작업자에 의한 혼합기 오조작을 방지할 수 있도록 Key Type의 기동스위치를 설치하고 '작업중' 등의 안전표찰 부착

다. 수동복귀형 비상정지스위치 설치

혼합기 전면에 위험 발생시 전원을 완전히 차단시킬 수 있는 수동 복귀형 비상정지스위치 설치

5. 범위반사항

-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 실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감 전 사 고

1. 재해발생 경위

2004년 7월 0일 16:20분경 부천시 소재 ○○노래방 전기 인입선 교체공사현장에서 A자형 알미늄사다리를 길게 펼쳐 건물벽체에 기대어 놓은 후 본 사다리를 이용하여 약 80m 높이 공중에 설치된 3상 4선식 케이블 인입선에서 노래방측으로 3상 전원을 접속·인출하기 위해 활선 피복벗기 등 배선 결선작업을 하던 중 오른손이 충전부에 접촉되어 사망한 재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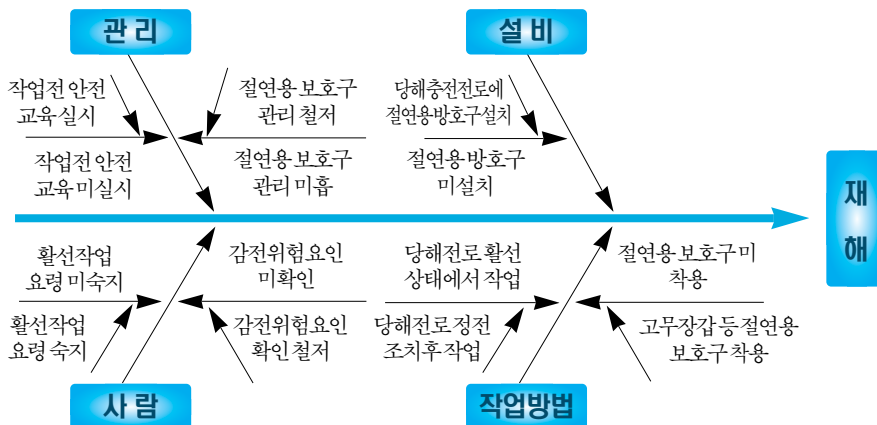


2. 재해발생요인

- 가.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 나. 당해 전로의 정전조치 미 실시
- 다. 근로자 안전교육 미 실시

3. 재해 요인도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절연용 보호구 착용

케이블 인입선에서의 배선결선작업은 저압 활선작업으로 감전재해 위험이 우려되므로 고무장갑, 고무소매 등 절연용 보호구 지급·착용 후 작업 실시

나. 작업전 당해 전로의 정전조치

배선결선작업은 활선작업이므로 작업 중 신체가 충전전로에 접촉하거나 접근하여 감전재해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당해 전로의 개폐기를 사전 개방하여 정전시킨 후 작업

다.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감전재해 발생 위험성 및 사고사례, 안전작업절차, 작업계획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함.

5. 범위반사항

-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 실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1. 재해발생 경위

2004년 6월 ○일 17:50분경 인천시 소재 ○○공장 건물 개보수 공사현장에서 피재자가 기존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의 뽐칠도장 작업 중 지붕의 썬라이트(Sunlight) 부분을 밟는 순간 플라스틱 재질(두께 약 1mm)의 지붕 마감재(가로×세로 : 650×750mm)가 파손되면서 추락하여(6m) 사망한 재해임.



2. 사안별 경요인

- 가.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나. 개인보호구(안전대) 미착용
- 다.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3. 재해 요인도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추락방지조치 철저
슬레이트지붕위에서와 같은 고소작업시에는 근로자의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폭 30cm 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추락방지조치 철저

나. 개인보호구(안전대) 착용 철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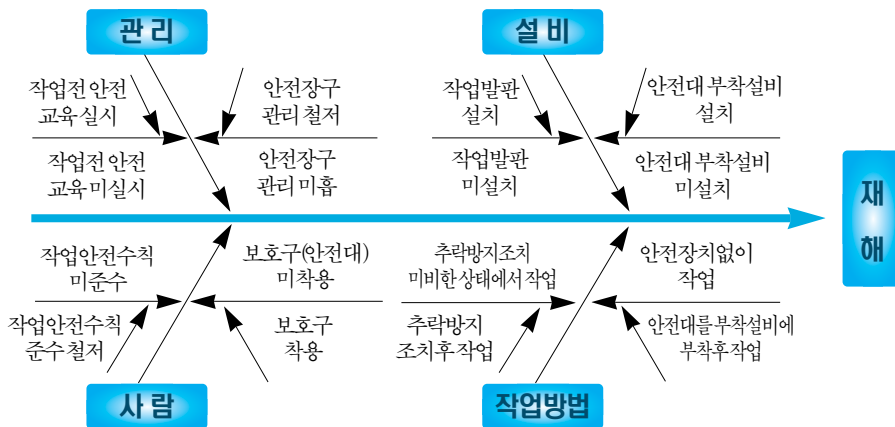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후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토록 관리감독 철저

다. 근로자 정기안전보건 교육 실시

근로자 정기안전보건 교육을 통하여 고소작업시 추락위험성과 작업요령을 주지시켜 추락재해를 방지토록 함.

5. 범위반사항

-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추락사고Ⅱ

1. 재해발생 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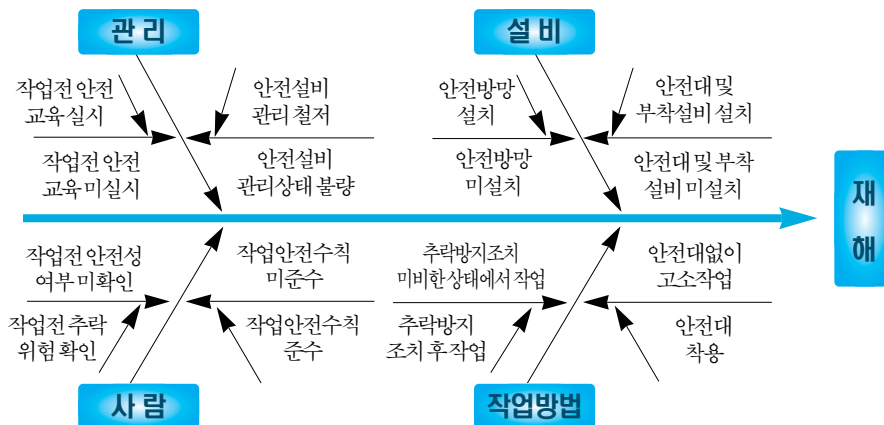
2004년 6월 0일 13:20분경 부산시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거실 유리 인양을 위한 도르레 고정용 섬유벨트를 벤츄레이터에 묶기 위해 경사지붕 상부에서 섬유벨트를 손으로 잡고 벤츄레이터 위치로 이동 중 경사지붕 측면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요인

- 가. 추락방지조치 미흡
- 나. 안전대 미착용
- 다. 안전교육 미실시

3. 재해 요인도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안전대 착용 철저
고소작업을 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항상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걸고 추락방지조치를 한 후 작업하여야 함.

나. 개인보호구 착용 관리 철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였을 경우 이를 착용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다.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통하여 고소작업시 추락위험성과 작업요령을 주지시켜 추락재해를 방지토록 함.

5. 범위반사항

-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1. 재해발생 경위

2003년 12월 ○일 17:00분경 포항시소재 ○○ 공장 동 바닥공사 및 기계기초공사 현장에서 피재자와 함께 줄걸이 작업을 수행했던 동료작업자는 기설치된 사다리를 이용하여 지상으로 이동하였고, 피재자는 나머지 청소작업을 완료한 후 지상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천장크레인 후크를 잡고 올라가려다가 크레인 와이어로프 드럼홈에서 고정구가 이탈되어 추락하여 낙하된 후크장치에 맞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

- 가.크레인설계사양미준수
- 나.관리감독소홀
- 다.안전교육미실시

3. 재해 요인도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크레인 설계사양 준수
천장크레인을 사용함에 있어 특정 작업을 위해 최대 양정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등 크레인의 설계사양에 벗어난 용도외의 사용금지

나. 관리감독 철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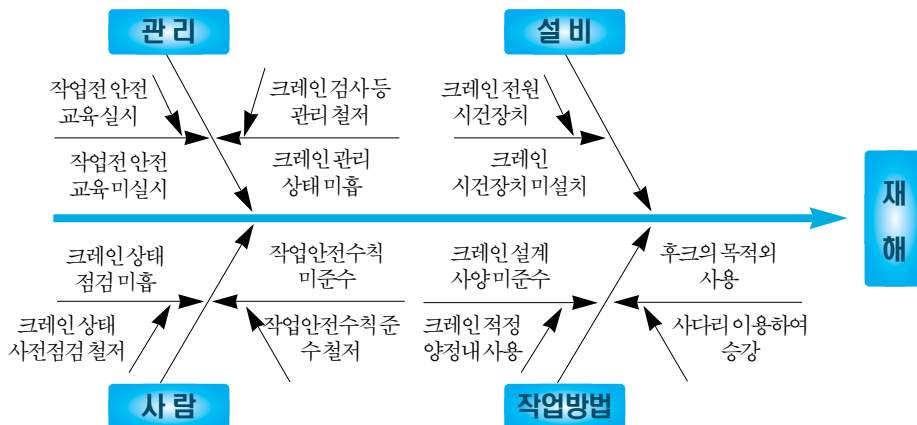
크레인의 임의사용방지를위하여 크레인 운전정지 조치(전원스위치 시건장치 등)등관리감독철저

다.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

근로자정기안전보건교육을 통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시 낙하위험성과 작업요령을 주시시켜 낙하재해를 방지토록함.

5. 범위반사항

-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



중 돌 사 고

1. 재해발생 경위

2004년 6월 0일 08:40분경 동해시 소재 ○○목재 철탑 기초보호설비공사 현장에서 2명의 근로자는 협소한 진입로상에 덤프트럭 진입시 지장이 되는 차량을 이동시키고 덤프트럭 전면에서 신호작업을 수행하였고, 현장소장과 피재자는 골재하차 장소의 지장자재(BuroPam)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피재자가 결속작업을 수행하던 중, 덤프트럭이 후진하여 자재결속을 하던 피재자와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임.



2.1

- 가.작업계획서 미작성
- 나.유도자미배치
- 다.근로자안전교육미실시

3. 재해 요인도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작업계획서 작성

덤프트럭과 같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시에는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운반기계의 종류 및 능력, 화물의 종류 및 형상,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

나.유도자 배치 및 신호체계 수립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작업시 작업장소내 근로자의 출입금지조치가 곤란한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고, 운전자는 유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작업장소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신호방법 및 체계를 수립하여 작업

다.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재해발생 위험성 및 사고사례, 안전작업절차, 작업계획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함.

5. 범위반사항

-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